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71
----------	-------

발의연월일 : 2025. 11. 19.

발 의 자 : 김원이 · 전용기 · 이해식
김남근 · 박상혁 · 신영대
박홍배 · 한준호 · 안호영
박용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 전기사업자가 소규모 설비 변경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이로 인해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허가·비허가의 판단이 불명확하는 등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자가 허가받은 설비용량의 소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허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취득이 인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으므로, 무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전기사업 인·허가 및 설비정보 등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사업 인·허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

10조의2 · 제12조제1항 및 제24조의3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절차와”를 “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절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를 “허가권자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일부의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항

제5호부터”를 “제1항제4호의3, 제5호부터”로 한다.

4의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장제2절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자가용전기설비를 포함한다)의 관리와 전기사업 인·허가등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에 관한 정보
2. 제7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관한 정보
3. 제9조에 따른 사업개시에 관한 정보
4.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인가 정보
5.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에 관한 정보
6.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정보
7.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에 관한 정보
8.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
9.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정

보

10.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11.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관한 정보

1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권자 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에 관한 설비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을 인가받았거나 신고한 전기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설비 관련 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⑦ 그 밖에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생략) <u><신 설></u>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④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 ----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절차,----- ----- -----.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허가권자에게-----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4의2. (생 략)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 14.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생 략)

⑥ · ⑦ (생 략)

<신 설>

우

4의3.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5. -----

-----일부의 양수, 법인의 분할 · 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

6.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제1항제4호의 3, 제5호부터-----

2.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전기사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자가용전기 설비를 포함한다)의 관리와 전기사업 인·허가등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에 관한 정보
2. 제7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관한 정보
3. 제9조에 따른 사업개시에 관한 정보
4.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인가 정보

5.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인수
의 신고 등에 관한 정보
 6.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
업의 승계에 관한 정보
 7.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
에 관한 정보
 8.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
 9.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
 10.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
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
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
보
 11.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관한
정보
 1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
가권자 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 사업에 관한 설비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사 계획을 인가받았거나 신고한 전기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설비 관련 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u>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 「<u>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u>」을 따른다. ⑦ 그 밖에 <u>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u> <u>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	--